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전수곤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(2015.10.26.)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겸직신고 기한 및 서식 등 규정 구체화 (안 제5조)
○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(안 제6조)
○ 영리목적 거래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(안 제7조)
○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5조,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
○ 기　　타 : 조례안예고(2019. 5. 8 ~ 2019. 5. 17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우리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의 풍토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